

1

무엇이 문제인가

構造改善이 앞서야

崔 正 鈞 <釜山水産大 社會科學大學長>

어촌의 역사

어촌이란 어업을 주된 직업으로 삼는 다수의 어민들이 어업생산의 근거지가 되는 해안지역에서 이루고 있는 사회적 집단을 말한다. 이런 곳은 대체로 인근에 어장이 분포하며, 어항이 건설되고, 어획물이 매매되며, 어장관리나 어민들의 생산활동 및 생활에 관계되는 사업체와 수산업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연안 주민들은 이러한 어장, 어항, 사업체 및 어민조직(수협 등) 등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결합을 가지면서 집단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촌이라고 하는 연안지역의 특수지역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어민사회가 동서 및 남해안의 연안전역과 도서지방에 산재하며 그 수는 현재 약 3천여개로 파악된다. 그리고 어촌에 살고 있

는 어민의 수는 현재 세대수로서는 약 15만세대가 되며, 인구규모로는 약 70만명에 달한다. 60년대에는 약 120만명, 70년대에는 약 80만명의 인구가 어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민 정착사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 이것이 제일 먼저 성립되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식관습과 우리나라의 자연 및 지리적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한반도에 우리의 조상이 정착하기 시작한 역사와 함께 어촌의 역사도 요원하다 할 것이다.

어업사에 의하면 고대 부족 국가의 하나인 옥저(沃沮)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업을 중시해 왔다고 하며, 그 하나

의 증거로서 당시 고구려에 바치는 공조로서 해산물의 비중이 컸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해산물을 구하기 위하여 떠난 옥저인들의 배가 지금의 울릉도에 표착(漂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울릉도 어촌 성립의 효시가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

남부 부족국가인 마한(馬韓)에서는 어업을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고구려의 수군활약과 백제시대의 탐라국 정벌계획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찍이 조선술과 항해술을 개발한 우리 조상들의 어업생산활동도 상당수준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대시대의 유물인 영도동상동패총과 김해패총, 그리고 최근에 발굴한 남해안 옥저 상노대패총에서 발견된 유물은 고대인들의 정착수단으로 포획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

서 오래전부터 해안도처에는 지금의 연안어촌과 유사한 어업집락사회가 건설되었으며, 그것을 원기형태로 하여 오늘의 어촌, 어항이 성립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4세기경 중국으로 부터 전래된 불교의 영향은 3국시대의 어업에 대한 국가적 장려를 제한했다는 것이 한국 수산사의 지적이다. 그러나 백제, 고구려, 신라 3국이 정립하던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정착생활이 본격화되고 농경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에 주식인 미백생산은 물론, 필수적 부식생산으로서 어업발달을 수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3국의 해역분점상황을 보면 백제는 반도의 서남해안을, 신라는 반도의 동남해안을, 그리고 고구려는 반도의 서동해안을 각각 관할해 왔으며, 이를 통해 천혜의 호어장을 이용한 어업생산활동이 왕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한국수산사의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족의 식량자료와 식문화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은 비교적 풍부하며, 한국촌락사회의 역사적 전개구조를 밝히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수산업은 충효와 제사범절의 유교사상을 국가통치와 사회규범으로 삼은 조선조에 들어서면서부터 권문세가가 어장을 장악 경영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실록에서는 수산물의 종류를 어류 45종, 패류 11종, 해조류 20종, 그리고 기타 수산동식물

12종으로 도합 88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칭과 주산지, 그리고 생산시기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수산업이 생업수단으로서 널리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어촌은 한말에 이르러서는 선박과 어항을 매개로한 현대적 어업의 성립으로 그의 발달이 더욱 활발했으며, 일제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한층 촉진되어 나갔다. 일제는 식민지수탈정책을 통하여 어촌에 대한 수산물보급기지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이주어촌건설, 어로기술의 연안확산 등을 통해 해안지대에 인구집중화를 꾀해 나갔다.

합방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및 인구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국제조사자료를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1912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제1호를 보면 합방초인 1911년 당시 우리나라 어업종사자수는 58,040세대, 어업인구는 182,319명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어업세력은 총어선척수 13,024척, 각종 어업조업어구통수 26,146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수산세력으로 보아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의 어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안도처에서 어업생

〈표 1〉 日本 移住者數 및 移住漁村名(1898~1916)

어촌명	어가호수	인구	이주년도	어촌명	어가호수	인구	이주년도	
함북(2)	웅기	15호	50명	1909년	봉곡촌	50호	280명	1904년
	청진	12	60	"		송진포	49	243
함남(1)	원산	21	110	"	지구미	12	28	"
	진남포	25	125	1908	강산촌	60	242	1908
평북(1)	진암포	5	25	1909	노대도	22	101	1911
황해(2)	용호도	11	50	"	팔강포	30	135	"
	몽골포	24	139	"	신수도리	4	16	1909
강원(2)	주변	5	29	"	미조리	5	200	1910
	죽변	5	10	"	정자	7	28	1912
경북(1)	포항	25	120	"	진하리	14	57	1907
	일산	5	30	"	대변리	13	52	1908
경남(35)	방어진	135	550	1910	병해	30	268	1910
	"	200	900	1906	절영도	227	862	1910
	장생포	30	268	1910	다대포	32	114	1909
	새죽포	11	18	"	"	7	30	1906
	기장	14	56	"	하단	10	50	1908
	장승포	40	120	1908	용담포	29	120	1907
	지세포	15	75	"	영도	433	1,650	1898
	마산	20	100	"	안도	5	20	1909
	울미	29	42	"	죽정포	17	85	"
	무남	8	32	1910	무거포	17	85	"
	용남	12	60	1908	거문도	17	85	"
	남포	17	47	1909	송지	미상		1907
	두포	23	98	"	완도읍내	13	61	1915
	수육지도	5	25	1908	완도군외	26	미상	1916
	삼천포	12	60	"	가마구미	14	88	1915
	지리	80	331	1907	몽탄도	25	75	1907
	새죽포	15	60	1908	계주도(1)	20	187	1909
	진해	32	146	1912	충남(3)	8	30	1910
	장좌리	40	200	1899	정암리	48	193	1908
	성포리	37	150	1912	어강	17	68	1904
	동영	100	500	1910	경천	33	155	1910
	통좌촌	134	546	1909	전북(1)	21	84	1909
	구조라	42	230	1910	기타지역(1)	63	292	미상

자료 : 한국수산사, 수산청, 1968, p. 218, p. 283.

산활동이 왕성했다는 것과, 어업자들의 정착생활도 활발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구한국말에 정부는 수산업을 규제 조장하는 최초의 수산업규로서 「어업령」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이무렵 수산업발달이 근대적 산업행정의 대상이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방전후를 통해 장차 한반도에 대한 영구적 지배를 목적으로 우리 연안에 대거 이주해 오기 시작한 일본인의 이주어촌(移住漁村) 건설상황을 통해서 전래의 우리나라 어촌지역과 그 분포실태의 일부를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표에서 보면, 1989년부터 1916년 사이에 건설한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어촌수는 전국 14개도에, 총 65개 어촌이며, 이주어민수는 2,582세대 11,346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말의 우리어민수를 18천명으로 밝히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들 지역은 사실 일본인 어부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어민들의 생활 근거지이었을 것이 확실하며, 대부분이 그와같은 지역은 전형적인 어촌이거나 겸업형태의 포구로 알려진 곳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3포(부산포, 내이포 및 염포)시대의 어업을 통해서나 한말 거제일원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어민조직의 하나인 「거제한산어기조합」과 같은 단체가 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안에는 합방이전부터 지금의 그리고 강원도와 황해도 연 어촌계에 유사한 지선민들의

<표 2> 1930년대 전국 주요어촌과 분포(총211개)

도 명	어 촌 명
경기도(3)	덕적, 북도, 서도
충남도(5)	서면, 녹도, 외연도, 안흥, 석문
전북도(6)	어청도, 고군산, 미면, 의북리, 변산, 고창
전남도(61)	광양, 고흥, 위도, 구우, 골약, 나로도, 낙월도, 신좌, 안도, 해창만, 완도, 대정, 연도, 녹동, 청산, 중면, 거문도, 거금도, 군위, 등면, 심장리, 장흥, 금일, 신우, 여수, 수문, 노화, 옥정, 탐진, 신지, 화월, 강진, 고금, 대동, 부평, 소안, 의진, 송기, 조도, 찬죽, 우수영, 진도, 들산, 황산, 금강리, 상도, 화산, 구좌, 금오, 산이, 추자도, 화양, 몽탄, 제주, 하태도, 서귀, 경호, 무안, 정의
경북도(13)	영남, 감포, 장기, 구룡포, 영일, 곡강, 청하, 송라, 강구, 오보, 죽산, 영해, 울릉도
경남도(35)	부산, 통영, 낙동, 옥지, 강동, 시랑도, 방어진, 산양도, 대현, 진해, 온산, 진동, 서생, 웅천, 압남, 웅동, 다대포, 눌차리, 기장, 동해, 명지, 삼산, 밀양, 삼천포, 거제, 사천, 남포, 서포, 한산도, 지족, 장승포, 미조, 가조, 하동, 송진
황해도(9)	용매도, 용호도, 어화도, 강항리, 기창, 용천, 몽금포, 대청도, 조도
평남도(9)	한천, 청천, 귀림, 용호, 해소, 서해, 적송, 병산, 이암
평북도(11)	용천, 신도, 철산, 부서, 선천, 신미도, 장도, 관홍, 애도, 박천
강원도(26)	학일, 담철, 순령, 고성, 장전, 현내, 거진, 대포, 항현, 손양, 현북, 현남, 죽왕, 토성, 주문리, 오진, 강동, 옥계, 망상, 원덕, 삼덕, 평해, 기성, 원근, 죽변
함남도(8)	퇴조, 삼호, 전진, 옥편, 신포, 차호, 군선, 신창
함북도(26)	청일, 예풍, 어대진, 일신, 온대진, 용대, 독진, 연천, 하가, 부거, 하대, 삼해, 포하, 이진, 보충, 용기, 우동동, 만, 신화동, 서수라, 삼포동, 다진동, 학동, 학중, 성진, 학성

자료 : 한국수산단체사, 수협중앙회, 1980, pp.120-130.

어업계(漁業契)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합방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연안도서지역에는 상당수의 어촌이 결설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일합방후 일제는 우리나라의 경계를 더욱 조직적으로 수탈해 가기 위하여 각종 산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농어촌 자력갱생정책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별 자치조직이 관주도로 강행되어 나갔다. 수산업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적 산물로 탄생된 것이 지역별 어업조합과 업종별 수산조합이다. 이 가운데서 지구별 조합으로 조직된 어업조합의 조직기반이 되어온 당시 어촌의 수를 통하여 전국의 주요어촌과 분포실태를 보기로 한다. 그것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1930년대의 우리나라 주요어촌수는 211개로 알려지며, 그의 30%가 전남지방에, 16%는 경남지방에, 그리고 12%는 합남지방에 각각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2%의 어촌은 9개 도에 걸쳐 산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일제초기인 1911년에 밝혀진 전국 65개 어촌수와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운 어촌수의 증가이며, 어촌의 해안별 분포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촌의 범위와 분포

어촌이란 어업을 주된 산업 혹은 생업으로 삼는 다수 어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일정한 지역공간을 갖는

사회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그 범위와 어민구성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어촌의 수와 유형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체로 어민구성의 비율을 국민수의 20%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촌범주로 인식되는 곳으로는 어업자연촌락과 연안 행정촌락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읍·면단위까지를 어촌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어항이나 어촌계도 어촌적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정책의 최소단위로서 활용되고 또한 사회 경제적 분석단위로서도 널리 활용되는 리·동수준의 행정촌락단위를 어촌범위로 규정하기로 한다. <표 3>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어촌계조직현황을 통해 밝힌 어촌통계이다.

내무부 지역경제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어촌수는 리·동범위의 기준에서 볼 때 총 67,529개로 밝혀지며,

이 중 어촌의 수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3,181개이다.

3,181개의 우리나라 어촌은 40%가 전라남도 연안에 분포하며, 다음은 경남연안에 22%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어촌은 경남과 전남 두 지방에 거의 치우쳐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어촌은 경기도를 비롯한 6개도에 분산되어 있다. 전남과 경남지방에 어촌 발달이 활발한 이유의 하나는 어업생산활동에 적합한 해안과 어장 및 항만의 발달이 풍부할 뿐더러 특히 최근 어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양식기술의 보급이 빨랐던데 기인한다.

어촌의 유형은 기준설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크게 어업특성에 좇아 어로형어촌, 증양식형어촌 및 혼합형어촌으로 나눌 수 있고, 다음은 어촌의 위치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는 도시근교형어촌, 연안 어촌 및 벽지 어촌으로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전자를 종사어업별 어촌분류, 후자를 소재지별 어촌분류

<표 3> 우리나라 어촌분포와 유형

(단위 : 개)

도별	어촌수	어촌유형(I)			어촌유형(II)		
		어로형어촌	증양식형어촌	혼합형어촌	도시근교형어촌	연안어촌	벽지어촌
경기도	247(7.8)	59	97	91	33	88	126
강원도	129(4.1)	98	-	31	58	61	10
충남도	333(10.5)	64	209	60	54	224	55
전북도	178(5.6)	68	27	83	28	80	70
전남도	1,276(40.1)	168	976	132	105	792	379
경북도	198(6.2)	139	1	58	24	168	6
경남도	701(22.0)	329	93	279	224	436	41
제주도	119(3.7)	8	87	24	25	73	21
계	3,181(100.0)	933(29.3)	1,490(46.8)	758(23.9)	551(17.3)	1,922(60.4)	708(22.3)

()내는 구성비율.

자료 : 수협중앙회, 1989년도 어촌계 조사자료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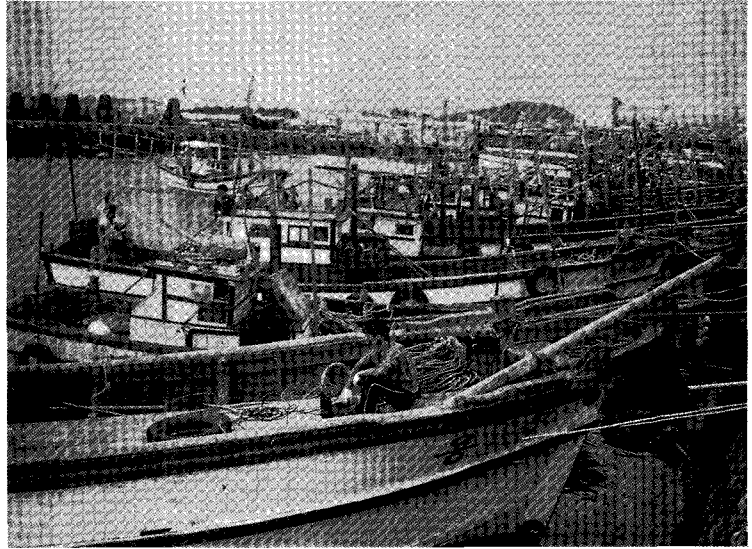
라 할 수 있는데, 종사어업별로 보면 어로형어촌이 29.3%, 증양식형어촌이 46.8%, 혼합형어촌이 23.9%로서 전체어촌의 약 절반이 증양식형어촌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남과 충남 두 지방에 전국 증양식어촌의 약 80%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은 강원도와 경북 연안에는 어로형어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어로형어촌이란 어촌의 주된 어업의 종류가 연안 및 근해어업이며, 이와 같은 어로어업경영자와 관련어업종사자들로 이루어지는 어촌을 어로형어촌이라 말한다.

물론 이 안에는 어로행정(漁撈行程)이 연안수역에 한정되며, 소규모어선에 의해 국지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소어항 중심의 어로형어촌과 어업의 규모가 크고 어로수역이 근해 및 원양으로 확대된 대규모어항을 생산과 생활근거지로 삼는 어로형어촌도 있다.

증양식형어촌은 제 1·2 및 3종의 공동어업권어장과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연안에 널리 발달해 있는 어촌을 말한다. 그러나 증양식어촌은 다시 양식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에 따라 경남과 전남에는 굴양식어촌이, 전남에는 김양식과 미역양식 등 해조류양식어촌이, 경기도, 충청도 및 전북도에는 일반패류양식어촌이, 그리고 어류양식어촌은 경남의 충무, 거제연안, 전남의 여수지역에 각각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와의 거리 및 생활환경



의 발달정도를 기준으로 도시근교형어촌 연안어촌 및 벽지어촌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의 유형별 분포는 도시근교형이 전체의 17.3%, 연안어촌은 60.4%, 그리고 벽지어촌은 22.3%의 분포비율을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연안어촌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어촌가운데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환경이 불리한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의 수도 708개로서 전체의 20%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역은 어항시설이 미비한데다가 어·해황 조건이 거칠고 때로는 군사기지와의 인접해 있어서 어로활동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곳에 특별한 어촌정책과 어촌개발 의지를 모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시근교형어촌은 일명 시가지어촌이라고도 하며, 어촌의 분해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종적

단계의 어촌에 해당한다. 대체로 이것은 어촌이 도시가운데 소재하거나 도시주변에 위치하게 되므로 어민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도시를 통하여 영위해 나간다.

그러므로 도시근교형어촌 어민들은 연안어촌이나 벽지어촌의 주민들에 비하여 생활 또는 문화 만족도가 높고 도시적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으나 도시와 원거리에 있는 연안어촌과 벽지 어촌민들은 그 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어촌적 성격이 농후한 전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 공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에 비하여 위협을 덜 받지만 소득의 어업의존도가 높으므로 어업외의 취업기회가 협소하고, 어업생산이 불확실하여 흉어가 겹치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게 된다.

어촌의 유형을 소득수준이나 지역의 개발수준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저소득어촌, 자립

어촌 및 복지어촌으로, 그리고 쇠퇴형어촌, 정체형어촌, 안정형어촌, 성장형어촌 등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 경우 종사유형별 어촌이나 지역 및 어촌의 분포 실태와 비교하면 대체로 안정형이나 성장형어촌은 증양식어촌이나 혼합형어촌에서 많고, 도시근교형어촌에서는 복지어촌이 다수로 분포하고 반면에, 연안어촌과 벽지어촌의 경우는 대체로 저소득어촌이 상대적 다수를 점한다는 사실이다.

어항과 어촌

어항과 어촌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어항의 원래 뜻은 선박의 계류, 입출항을 돕는 인위적 시

설로서 알려지고 있으나 넓게는 그 시설을 포함하는 일정한 수역과 육지공간을 어항이라 한다.

어항은 그곳이 선박의 빈번한 입출항, 계류, 정박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선박의 용품 생산물의 수송과 거래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므로 이런 것에 관련되는 시설과 인간이 집중되면서 자동적으로 어촌이라고 하는 사회집단이 형성된다.

따라서 산업혁명에 의해 도시가 건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항은 어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이 된 어선의 출현과 그의 동력화 및 대형화의 진전에 따라 성립 발달하는 시설이다. 이것이 어촌의 중심지가 되고 어업의 자본주의화 과정

에서 소규모로 존재하던 것이 대규모어항어촌으로 발달하여 마침내 어항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어항과 어촌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어항을 어촌의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항수와 어항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면 1989년 현재 어항수는 총 1,941개이며, 종류는 크게 4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어항 구분법과 관리방법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다른점은 일본에서는 제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어촌범위의 소규모어항을 어항법에 규정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기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촌에 대하여 어항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그 수가 우리나라 전체 어항수의 약 80%를 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어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항이다.

전국 어촌수의 82%를 점하는 연안어촌과 벽지어촌의 어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고 생업과 지역개발에 직결된 이 제4종어항은 오늘날 어촌 문제해결의 차원과 지역발전의 균형화 차원에서 이의 어항건축과 시설강화를 위한 「어항법」하의 관리문제를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의 수산업동향에 의하면 1989년에 정부가 집행한 어항개발예산은 15개항에 총 526억원이며, 시설물량은 총연

<표 4> 어항수와 종류

	1985	1989	어항법상의 규정	일 본
제1종어항	37	37	수산청장관리, 전국적범위의 이용어항, 대규모 어항	시군범위 소어항
제2종 "	325	330	도지사관리, 지방적 범위의 이용어항, 중규모어항	도내의 어항
제3종 "	24	24	수산청장관리, 어업근거지 어항, 중규모어항	전국적범위의 어항, 대규모
계	386	391		
제4종 "	1,555	1,550	시장, 군수관리, 어촌적 범위의 이용어항, 소규모 어항	남도 벽지소재 어항
합계 "	1,941	1,941		

* 註 1) 위에서 우리나라는 제1~3종까지만 어항법에 등록된 어항이며, 제4종어항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1~4종까지 어항법에 규정한다.

2) 위의 어항외에 부산, 인천 등과 같이 대규모 항구가 있으나 이것은 항만법에 규정한다.

자료 : 수산청,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0, p.104.

" , 어업백서, 일본, 1988,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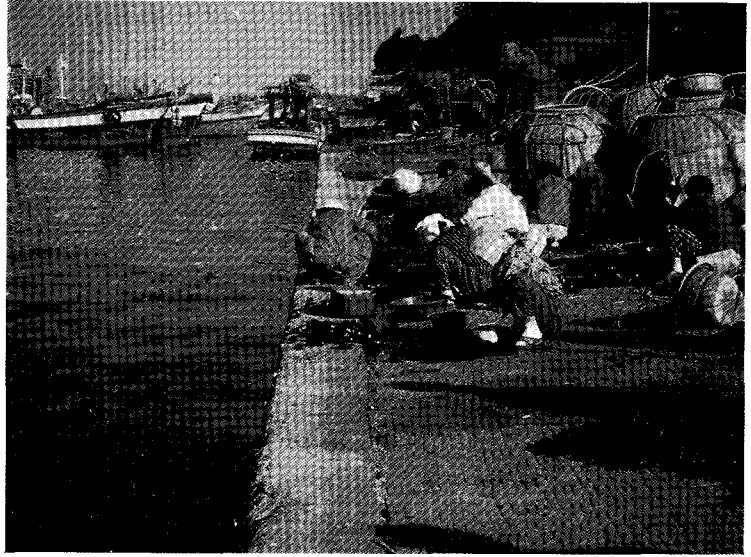
장 7,071m이다. 이것은 모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청장과 도시사관리하의 제 1·2 및 3종어항에 대한 것이며 「어항법」의 지정을 받는 어항이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 관리하에 있는 제4종의 소규모어촌어항은 여기서는 물론,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농촌본위의 현 농어촌정책 하에서는 일선 시·군의 재정능력이나 시책의 방향이 어촌적 범위의 소규모 어항개발에 까지 관여하는 예산집행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아직도 경지정리와 농촌도로의 포장사업과 같은 것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행정력을 어촌개발이나 어업생산 증진을 위한 어항개선에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항의 기능은 ① 선박의 입출항기능, ② 선박의 계류 정박기능, ③ 수산물과 기타 물자의 양륙, 거래기능 ④ 어민의 거주장소 등 4대 기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항은 이러한 기능을 제고시키고 고도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표5>와 같은 시설물을 구비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어촌과 농촌의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주민들의 생산장소와 생활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어촌은 이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농촌은 이것이 일치되어 있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어민은 작업공간이 유동성과 위험성을 갖는 해상인데 대하여, 농민은 양자가 일치하며, 안정을 갖는 고정적

토지에 두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농민은 육상을 상주 공간으로 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지만 어민들은 주거장소는 육상이고 생산장소는 해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장소인 어장과 주거장소인 육상을 동시에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어민각자가 안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어민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고 있는 어항은 대소에 관계없이 국가적 개발과 관리하에 두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어촌은 생태학적으로 규정된 일정수역범위(biotop)에 의하여 생산의 기초조건이 되는 어장범위가 결정되므로 어촌지역은 여기에 따라 일차적으로 지역적 공간영역이 설정되고, 다음은 어장이용범위의 광협을 규정하는 어항특성에 따라 어촌의 공간영역은 부

<표 5> 어항의 시설과 기능

어 항 기 능	어 항 시 설
① 선박의 입출항 기능	① 선박의 집안시설
② 선박의 계류, 정박기능	② 선박의 계류, 정박시설
③ 수산물의 양륙, 거래 기능	③ 방파제 및 호안시설
④ 각종물자의 유통기능	④ 양륙장, 가공처리의 유통시설
⑤ 수산업관련 정보화기능	⑤ 선박건조, 수리시설
⑥ 어민 및 관련 주민 거주 및 생활기능	⑥ 선용자재의 공급 서비스 시설
	⑦ 생활, 교육 및 문화편익시설

자료 : 榑本典昭, 漁村研究, 日本, 大明黨, 1987 동 참고

차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농촌은 전국적으로 토지 특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인위적 행정적으로 농촌의 경계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선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인적, 물적자원의 유동성이 편리한 어항조건을 구비하는 어촌일 때 어장이용을 증대시키고 그의 외연적 확대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많은 어민들과 선박이 성황을 이루는 그와 같은 어촌은 항만화와 현대화가 더욱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어촌과 어업의 발달은 어항과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데 반해, 농촌은 어촌의 어항과 같은 시설적 공간영역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 집단 사회이다.

특히 어촌의 경우 개별어민의 생산시설인 어선, 창고, 처리가공시설 등은 모두 어항에 보관 또는 위치하게 되며 어항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자산의 합리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해 나가지만 농촌의 개별농민들은 그들의 필수적 생산시설이라 할 수 있는 농사용구, 축력, 경운기 및 수송수단 등은 일체 개별 농가가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해 나가는 농업자산의 철저한 사적 관리체제하에 있다.

그러므로 산업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경영자산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어업경영재산의 전부를 점하는 선박자산의 보관, 관리 및 이용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어항시설의 만족도

여부는 어업개별경영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의 입출항을 편리하게 하고, 정박 계류를 위한 일정수역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방파제 및 호안시설 등을 어항건설의 필수적 요건으로 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촌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개별어민들의 선박자산을 가급적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항편의를 증대시키는데 근본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최근 어촌의 인구 및 자본이 거의 도시로 유출되어 어촌은 모든 면에서 지나친 결핍화현상에 직면해 있는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도 어선의 대형화 고속화 및 현대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어항 조건과 그의 기능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적 및 물적자원의 유출현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어촌개발의 방향

어촌과 농촌은 유사한 점이 있는가하면 근본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주농종어, 반농반어 형태의 어촌인 경우에는 그곳이 농촌인지 어촌인지의 구분이 모호할 뿐 더러 주식산업인 농업과의 분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어촌 실정이다.

그러나 연안의 대부분 주민들은 어업을 통해 생활수단을 강구하고, 어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산업인만큼 어업을 주된 직업자로 하여 구성된 집단사회분석에 있어서 어항이라고 하는 시설과 공간적

영역을 간과하고서는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것이다.

실로 어항은 어촌에 있어서 생산과 생활을 연결하고, 육상과 해상은 수역과 육지를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그의 수익적 활용을 도모하고 어민공동의 시설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어항은 어촌이라고 하는 촌락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중심센터이다. 이를 통해 어촌과 도시와의 동화작용이 촉진되며, 어촌과 농촌과의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어촌생활의 합리화 및 광역화도 이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후 어촌개발방향은 어항을 어촌의 생산과 생활의 거점지역으로 하는 광역적지역개발의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항개발에 초점을 둠으로써 어항의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고 그의 기능을 현대화, 고도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어촌의 현대적 기능을 높이고 쾌적한 전원공간으로서, 그리고 어촌주민다수가 정착해서 생업과 사업 및 사회 경제적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어촌을 재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가장 많은 어민들의 거주영역이 되고 있는 어촌적 어항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선사업을 급선무로 하는 어촌개발정책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㉔